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30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-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9누65117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
원고, 항소인	A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9. 10. 25. 선고 2019구합1166 판결
변 론 종 결	2020. 4. 24.
판 결 선 고	2020. 5. 15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피고가 2018. 7. 27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30

1. 인정사실

갑 제1호증, 갑 제2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.

[1]

○ 원고는 2015. 1. 14. [redacted]구 B 토지 및 그 지상 C 건물(지하 3층-지상 10층, 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다.

○ 원고는 위 취득에 관하여 「지방세법」(2015. 7. 24.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이 규정하는 40/1000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268,115,600원을 신고 · 납부하였다.

[2]

○ 원고는 2018. 7. 10. 위 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위 「지방세법」 제1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28/1000 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세율에 따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.

○ 피고가 2018. 7. 27.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2. 주장 및 판단

(1) 원고는,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경매는 매매의 일종이고(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다15574 판결 참조),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다(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1다3703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30

판결 참조). 경락인이 강제경매 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 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,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(대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).

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고,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.

(2) 원고는,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전혀 승계하지 않았고, 2016. 12. 27. 개정된 「지방세법」 제6조 제1호는 2017. 1. 1. 이후부터 적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임의경매에 있어서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한편, 전세권 등은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고,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(「민사집행법」 제91조).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의 성질 및 대항력 유무 등에 따른 것이지,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기 때문은 아니다.

「지방세법」이 2016. 12. 27. 개정되면서 제6조 제1호에서 원시취득에 관하여 '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'고 규정하였는데, 이는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는 본래 원시취득이지만 취득세에 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30

하여는 원시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특별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개정된 규정이므로,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을 원시취득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없다.

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(2016. 6. 23. 선고 2016두34783 판결)은,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「지방세법」이 '원시취득에서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' 등을 종합할 때 수용재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서, 이 역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을 원시취득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